의안번호 2210858 의 뢰 인 김소희의원 회 답 일 2025.6.18. 추계번호 25B3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u>다만, 지</u>		
		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		
		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의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		
		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단서 신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 하나의 처분 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변경함으로 써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잉제재를 방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음
- □ 개정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이 변경되어 처분권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법제28조1)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도

¹⁾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할 수 없게 되므로,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고,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정·일반폐기 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환경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중복하여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을 부과받게 될 수 있음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매출액²⁾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상이함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의 총액은 27억 8,300만원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²⁾ 매출액의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름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정·일반폐 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중복하여 부과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영업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폐기물처리업체의 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가 어려움
-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